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 10. 13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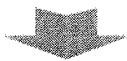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일부 개정조례 안(요약)

1. 조례 제3조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

(현행)

-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



(개정안)

-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16를 곱한 금액

2. 조례 제3조 별표1 (비고 1)

(현행) : 인접한 토지

(개정안) :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3. 조례 조항 및 별표 삭제

(현행) : 조례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및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 조례 제9조의2 및 별표 2 (조항 삭제)

⇒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적용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보완

기타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출자 : 마포구청장
- 나. 제출일자 : 2011. 09. 30
- 다. 회부일자 : 2011. 10. 04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표현을 정비·보완하고 함.

3. 주요내용

- 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안 별표 1 제3호)
- 나.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로 각각 인하함(안 별표 1 제4호)
- 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함(안 별표 1 비고 제1호)
- 라.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 해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함
(안 제9조의2 및 별표 2)
- 마.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42조, 제74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1. 8. 25 ~ 9. 14(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이상없음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5.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표현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 도로점용료의 징수체계는 「도로법」 제41조에서 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도로는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는 별표 2를 통해 국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 중 안 제3호에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현수막의 범위를 현행의 “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이외에 “그 밖의 용도”를 추가 신설 하였음.

- 안 제4호에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 등)과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그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의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 하였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관련시설 등 진·출입로의 경우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또한 동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설명 중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의 별표 1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점용 신청자와 관리청이 인접한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점용료 산정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항상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는바, 그 산정기준을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으면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토지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논란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현행 조례를 삭제하고 법령으로 대체한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

- 과태료 부과의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각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었음.
-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제74조를 신설하여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다양하게 규정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 5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및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

-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별표 5의 제2호 나목과 다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부과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나목”은 점용허가를 받은 후 초과점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고, “다목”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인데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위법의 정도가 심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낮아 모순이 있으므로 향후 조례로서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이를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9.17, 개정 2011.5.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정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상한액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상한액 150

- 기타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띠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조례 제3조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1.(생략) 2.(생략) 3.현수막 <u>(제사나 종교행사 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것을 포 함한다)</u>	(생략)	(생략)	(생략)	1.(생략) 2.(생략) 3.현수막 <u>(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 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 것)</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진·출입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 주 차장 10면 이상	(생략)	(생략)	<u>토지 가격 에 0.025를 곱한 금액</u>	4.진·출입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 주 차장 10면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토지 가격 에 0.02를 곱한 금액</u>
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진·출입로	(생략)	(생략)	<u>토지 가격 에 0.020를 곱한 금액</u>	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진·출입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토지 가격 에 0.016를 곱한 금액</u>
5.~11.(생략)				5.~11.(현행과 같음)			
※ 비고							
1. 토지가격은 <u>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u>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u>							
2 ~ 3. (생략)							
1. 토지가격은 <u>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u>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u>							
2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p> <p>5.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u>당해</u>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외경으로 한다.</p> <p>6 ~ 8. (생략)</p>	<p>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p> <p>5.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u>해당</u>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외경으로 한다.</p> <p>6. ~ 8. (현행과 같음)</p>
<u>별표2 (생략)</u>	<u>별표2 (삭제)</u>

■ 조례 제9조의2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현황 비교표

번호	위반사항	도로법 시행령(별표 5) - 신설 -	현행 조례(별표 2) - 삭제 -
1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 200만원 초과면적 1m ² 이하 50,000원 이후 1m ² 마다 100,000원	상한액 300만원 초과면적 1m ² 이하 50,000원 이후 1m ² 마다 100,000원
2	도로점용허가 없이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상한액 150만원 점용면적 1m ² 이하 100,000원 이후 1m ² 마다 100,000원	상한액 300만원 점용면적 1m ² 이하 100,000원 이후 1m ² 마다 1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 미제출 또는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200만원 (회당)	300만원
4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200만원 (회당)	300만원
5	굴착공사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회당)	미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상한 50만원)
6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회당)	미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상한 50만원)

※ 참고자료

□ 차량 진·출입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1,225	2,184,560	1,199	2,143,548	98%
2011년	1,199	1,921,680	1,118	1,851,595	96%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차량 진·출입 점용료 요율인하($0.025 \rightarrow 0.02$ 및 0.016)

- 2010년 세입 대비 약 2억원 감소 예상

□ 차량 진·출입 점용요율 변경 전·후 부과 금액 비교(예시)

▶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명 이상 점용요율 변경 : $0.025 \rightarrow 0.02$

주소	공시지가(원)	점용면적(m^2)	점용요율	부과금액(원)	비고
합정동 368-3	2,940,000	16	0.025	1,176,000	변경 전
			0.020	940,800	변경 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점용요율 변경 : $0.020 \rightarrow 0.016$

주소	공시지가(원)	점용면적(m^2)	점용요율	부과금액(원)	비고
합정동 368-2	2,940,000	21.7	0.020	1,275,900	변경 전
			0.016	1,020,700	변경 후

□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471	74,792	293	39,202	52%
2011년	343	58,931	178	25,435	43%

※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7호, 2011. 5.30, 일부개정]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 나목·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둑기 내용 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별표 5 제1호 나목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30>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9.1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소 재 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3.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그 밖에 「도로법 시행령」은 제74조를 신설하여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다양하게 규정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별표 5로 통일하였음.

■ 도로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9.17, 개정 2011.5.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 제1호	50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u>200</u>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2호	<u>150</u>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 제2호	50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 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3호	200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4호	200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 제3호	50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나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1) 초과 점용면적 $1m^2$ 이하인 경우: 5만원
- 2) 초과 점용면적이 $1m^2$ 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m^2$ 를 넘는 $1m^2$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다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1) 초과 점용면적 $1m^2$ 이하인 경우: 10만원
- 2) 초과 점용면적이 $1m^2$ 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m^2$ 를 넘는 $1m^2$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